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도문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67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7일

발 의 자: 도문열 의원(1명)

찬 성 자: 경기문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지향, 김춘곤, 김형재, 김혜영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영한, 박칠성, 박환희, 서상열, 서준오, 송경택, 옥재은, 유정인, 윤기섭, 이경숙, 이민석, 이영실, 이용균, 이종태, 이종환, 임만균, 최민규, 허·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39명)

1. 제안이유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 기부채납 대상 시설을 조례로 규정
-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스타트업, 산학협력시설, 국제금융오피스 및 이를 지원하는 시설 등이 필요하나, 기부채납 가능 공공시설의 용도가 한정되어있어 다양성 있는 업무활동 위한 기반 마련 필요

2. 주요내용

- 가.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 가능시설을 확대함(안 제19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
- 다. 기타 : 신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공공임대업무시설(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서,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전략 산업을 육성·관리·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목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 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</p> <p>1.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 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라 목에 따른 기숙사(이하 "기숙사"라 한다)</p> <p>3. 공공임대산업시설(「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 또는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권장업종과 관련된 시설로서,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,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 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)</p> <p>4. 공공임대상가(「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」 제3조제2호에 의한 상가로서, 시장 또는 구청장</p>	<p>제19조(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이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)</p> <p>〈신 설〉</p>	<p>5. <u>공공임대업무시설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서,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전략산업을 육성·관리·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)</u></p>